##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3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안도걸・임호선・황정아

정일영 · 김태년 · 정준호

박성준 • 민형배 • 박홍배

서삼석 · 조인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 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 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 법률 제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5억원"을 각각 "7억 5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7억 5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7억 5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7억 5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제2 1조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4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u>5억원</u> 미만이	<u>7억</u> 5천만원-
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u>5억원</u>	
을 공제한다.	<u> 7억 5천만원</u>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	제21조(일괄공제) ①
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	
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	
액을 합친 금액과 <u>5억원</u> 중 큰	<u>7</u> 억 5천만원-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u>5억원</u> 을 공제한	<u>7억</u> 5천만원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	
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	
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	
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 세 과세가액이 <u>5억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 3. (생략)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 여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 ما حالیا ما
<u>7억</u> 5천만원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7억 5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